

특집 : 東아시아에서의 法, 植民主義, 近代性(2)

## 프랑스 植民地支配期 베트남에서의 유럽法과 慣習法

타카다 요오코(高田洋子)\* · 이경주\*\* 역

### 목 차

- I. 머리말
- II. 전근대 베트남사회의 법을 둘러싼 논의
  - 1. 부부가산제 및 재산상속법
  - 2. 형법 및 보증제
  - 3. 전근대법의 평가
- III. 프랑스 식민지기의 근대법 도입
  - 1. 코친차이나의 토지법
  - 2. 촌락통치령
  - 3. 관습법의 입법화
- IV. 결론

### [국문요약]

베트남에서 전통적 관습법이 프랑스식민지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근대적인 법체계로 변모해 가는가를 토지법, 촌락통치령, 관습법의 입법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식민당국자는 전통·관습의 온존과 더불어 부분적인 영역에서만 근대법의

\* 日本 敬愛大學 교수.

\*\* 仁荷大學校 法科大學 교수.

원리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봉건성의 붕괴와 근대법체계의 수립이라는 양면에서 불완전한 법제를 베트남에 형성하게 되었다.

[주제어] 유럽근대법, 베트남법, 코친차이나, 고유법, 법전화, 토지법, 嘉隆법전, 식민통치, 전통, 촌락통치령

## I . 머리말

### 1.

홍강(紅江)델타를 요람의 땅으로 여기는 베트남의 국가(안남제국)가 남진하여 현대 베트남과 거의 같은 영역을 획득한 것은 19세기 초반의 일이었다. 1802년 구엔(Nguyen · 阮)왕조의 초대 지아 롱(Gia Long · 嘉隆帝)황제는 베트남의 수도를 하노이로부터 중부의 위에(Hue · 順化)로 옮겨, 오랜 역사를 가진 북부와 신개척지인 남부를 아우르는 통일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 유럽세력의 지배가 확대되면서, 통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강대한 프랑스에 의한 간섭을 받았다.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전반까지 구베트남 구엔왕조의 판세는 톤킹(북부), 안남(중부), 코친차이나(남부)로 분할되어, 저마다 다른 정치기구 아래서 식민통치를 받았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는 동아시아 세계의 주변에 탄생된 전근대국가가 근대국민국가로 전환하는 과도기의 ‘결절점’으로서 베트남역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발표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식민지시기 베트남의 프랑스 근대법도입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영국과 대항하기 위해 강대국의 위신을 걸고 전세계에 식민지를 획득했다. 프랑스령 인도지나의 하나인 베트남은 프랑스제국의 극동관여의 중심적인 한 축을 이루었다. ‘문화제국주의’라고 평가되기도 하는 프랑스는, 프랑스혁명의 이념을 체현한 본국의 근대법을 식민지에 어떻게 적용한 것일까? 베트남사회는 식민지 지배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은 것일까?

## 2.

이 발표는 우선 I 에서, 프랑스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받기 이전에 동아시아 중심문화권의 일부였던 베트남(베트남 킵족)사회의 법제도를 개관한다. 다음으로 II 에서는 프랑스식민지 권력하에서의 법질서의 형성과 그 성격을 명확히 한다. 전근대로부터 근대로의 법제도상의 변화는 양자의 재판과 접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유럽근대법과 관습법의 절충은 식민지사회의 법의 실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전형적인 예이다.

## 3.

오늘날 사람들은 ASEAN에 가맹한 베트남을 ‘동남아시아’라는 지역개념의 틀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학문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사람들의 생각에는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 공통하는 유교주의의 사회적 규범이 살아 있다. 역사상 1000년에 걸친 중국지배의 영향은, 예를 들면 10세기 이후의 여러 독립왕조가 중국에 유사한 통치제도를 받아들여, 다른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성문화된 한적(漢籍)법전을 오랫동안 편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에는 주로 중국법제사 연구자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전에 행한 「안남법」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들은 베트남(Annam)사 및 안남법을 중국 주변에 위치한 동양세계의 일부로서 해석하고 평가했다. 그들은 베트남 최고의 법전인 15세기의 「여조형률(黎朝刑律)」, 19세기의 「가룽(嘉隆)법전」등을 로마법이나 중국법과 비교하고 그 유사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차이에도 주목하여 베트남 사회에 대하여 깊이 통찰했다. 우선 일본의 이러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4.

프랑스식민지배기의 유럽법에 대해서는 ① 근대적토지법의 수용, ② 행정법의 중심이 되는 촌락통치령, ③ 관습법의 입법화 등 3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① 베트남 식민지시대의 경제개발 가운데 관할지 코친차이나의 메콩델타의 벼농사의 발전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코친차이나의 쌀생산과 수출은 식민지경제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메콩델타의 경제개발은 식민지정부의 토지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전통적 베트남사회에서 토지는 모두 주권자에 속한다고 생각되었다. 프랑스는 ‘촌’에 위임된 구래의 토지관리를 바꾸고, 사유지의 토지등기령을 거듭 포고했다. 그리고 무주지(無主地)를 국유지로 편입하여 신청자에게 적극적으로 분배했다(불하법). 이러한 시스템은 토지개발을 촉진하였고 수출쌀의 생산력을 급증시키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반면 실제 토지를 개간한 경작자와 근대법에 기초한 소유권자인 부채지주의 대립은 급기야 1930년대에는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식민지체제의 붕괴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② 실제로 토지등기와 징세를 담당하였던 것은 ‘자치촌’이다. 식민지주민의 대부분은 농촌에 살았다. 식민지권력은 농촌통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책으로 베트남 구래의 촌락제도를 이용했다. 킹족의 촌락은 국가의 정부(丁簿, 성년남자의 명부, 인두세징수의 근거)에 기록된 등록민(inscrit) 가운데서 향신(鄉紳·notables)을 뽑아 촌행정과 분쟁처리를 하는 과두지배체제였다.

식민지정부는 1904년에 코친차이나의 촌락지배층의 서열과 자치의 역할분담을 상세히 정했다. 전통촌락을 근대적 행정법 아래서 지방자치체를 위한 최말단행정기구로 재편했던 것이다. 1921년의 법령에서는 자치체예산 등의 관리를 위한 여러 규정에 따라 중앙권력의 감독권을 넓혔다.

③ 현지 사회의 일반적인 국내 거래, 혼인, 상속에 관한 다툼은 관습법에 의하여 처리했다. 식민지정부는 토착의 법과 관습을 유지하는 원칙으로 기울었다. 예를 들면 톡킹에서는 안남법령자문위원회 아래에서 그들이 주도하여 조사하였고 프랑스 민법의 조항을 본뜬 형식 하에서 정비되었으며 법전화 되었다.

그리고 식민지주민의 복잡하게 분류된 법적 지위와 식민지에 적용된 두 개의 법체계 즉 프랑스법과 토착법의 병존상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관습법의 입법화의 근거에는 식민지의 전통사회와 그 유지를 위하여 유럽 근대사회의 개인주의가 식민지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권력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 II . 전근대 베트남사회의 법을 둘러싼 논의

### 1. 부부가산제 및 재산상속법

전근대베트남의 가장 오래된 법전은 15세기 여(黎)왕조 성종의 홍덕년간(1470~1497년)에 제정된 홍덕여율(洪德黎律) 내지 국조조율(國朝條律)이다. 홍덕여율은 18세기 후반에 책정된 여러 를 가운데서도 원률에 해당하며 3세기에 걸쳐 지켜진 법전이라고 평가된다. 홍덕년간을 더 거슬러 올라간 역사가 있다는 학자도 있다. 여율의 법에서는 베트남의 가산소유자는 부모이고, 당률에서처럼 부자가 아니다. 부부공산제를 취한다는 것, 아이들에게는 가산에 지분이 없다는 점은 중국법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牧野, 1944 ; 仁井田, 1960, pp.529, 533~534).

또한 베트남에서는 재산상속이 유언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게다가 일반적으로는 생전증여가 이루어졌다. 유언장은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작성되었고, 대서한 자를 증인으로 하였다. 당사자가 식지충인 경우는 대서시키지 않고 자신이 썼다. 유언보다 법정상속제가 일반적이었던 중국법과는 달리 법정상속이 보족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은 안남법의 특징이다. 상속이 유언을 중시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은 일본법과도 유사하다.

게다가 유언능력이 안남법에서는 남자에 한정하지 않고 부녀에게도 인정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향화(香火, 조상의 제사를 위해 할증된 상속) 배분 후 베트남에서는 나머지를 성별과 연령을 묻지 않고 균분배분하였다. 이는 남송시대를 제외한 중국법과는 커다란 차이점이다. 게다가 로마법에서 볼 수 있는 균분주의와 유사하다.

유언상속은 법전조문의 해독만에 그치지 않는데, 이는 일본인 역사가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베트남으로부터 가지고 돌아온 실제의 재산상속문서의 분석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仁井田, 1960, p.536 ; 山本, 1940).

유언장이 없는 경우의 유산상속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특유재산인가, 부부생활 중에 획득된 재산인가를 구별하여 규정이 덧붙여졌다. 죽은 자의 부모가 생존하여 있다면 특유재산은 부모에게 돌아가고 없는 경우에는 절반이 배우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반은 죽은 자의 부계혈족에게 주어졌다. 또한 처가 재혼하면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의 절반은 죽은 자의 배우자에게, 나머지 반은 죽은 자의 분묘라든가 죽은 자의 부모 또는 부계 혈족에게 배분되었다. 가산분할규정은 안남법에서는 중국법보다도 상세히 기록되었다고 한다(仁井田, 1960, p.536).

가족내의 질서에서도 가부장적 지배가 존중되었다. 부모, 가부장에 대한 자식과 처에 의한 위해에 대해서는 엄벌이 주어졌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인정되었다. 가족주의의 원칙은 일관되었고, 조부모와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자식의 중요한 의무였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모두 법으로 징벌하였다(仁井田, 1960, p.529).

그런데 19세기 초에 편찬된 황월율령(皇越律令·嘉隆法典)(1812년) 및 대남회전사례(大南會典事例)(1843년, 1851년)의 재산상속법에 관한 내용에는 위에서 말한 흥덕법전과의 모순점이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즉 앞서 중국법과의 차이에 특징을 보였던 안남법의 부부공산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 생전처분의 여러 규정 등이 구엔왕조의 가릉(嘉隆)법전에서는 애매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 유언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가산분할규정이 기록되어 있고 일관성을 결여한 법도 많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구엔왕조시대의 법전은 청대(淸代)법전의 복사판이라고 단정하고 거기에는 흥덕률과 같은 안남고유법의 독자성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을 법사연구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仁井田, 1960, pp.536~537).

## 2. 형법 및 보증제

15세기 베트남 형법은 당률과 명률 등 중국법의 영향이 짙다. 그러나 여률에는 중국법과 비교하여 법정주의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즉 범규에는 따르지 않는 임시 처분규정과 유추해석 등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률에도 명률에도 없는 규정, 예를 들면 중형에 가중을 하여 배상금의 규정(인명 금제도)이 있다거나, 간부(姦夫)·간부(姦婦)·노예에 대한 주인의 사적 제재의 허가, 황족과 그 친족의 형벌을 감면하는 등의 규정이 있었다(仁井田, 1960, pp.540~569).

국경을 넘어 외국을 나가는 것, 외국인과 통혼하는 것, 외국인에게 토지, 노예, 코끼리와 말, 무기, 병기 등의 재료를 파는 것이 금지되었다. 형법에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기술이 많았다. 같은 살인죄라 하더라도 목적,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에 의한 제재의 차이가 세분되어 있었다.

채무보증제도의 연구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중국의 오래된 법률에 유사한 유주(留住)보증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안남의 보증인은 채무자가 도망친 경우만 채무에 따르면 되었다. 그러나 후대에 만들어진 중국법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채무의 지불불능의 경우는 곧바로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채무를 지는 의무가 있고, 보증부담은 베트남의 그것보다 무거웠다. 사적 압류제도에 대해서도 안남의 여율이 중국의 오래된 법률의 형태를 남기고 있었다는 몇 가지 측면에서의 지적이 있다(仁井田, 1960).

### 3. 전근대법의 평가

이와 같이 일본의 중국법제사연구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여물을 중국법, 일본법 때에 따라서는 유럽의 고대법과 비교하면서 분석했다. 그리고 베트남법의 독자적인 면을 중국 법제도의 역사적 변천에 기초하여 고찰했다.<sup>1)</sup> 중국법의 시대에 따른 변화를 주지하고 여물이 명청시대의 법보다도 당이나 남송의 법률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베트남법의 특징을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청대의 법전의 복사판이 많았다고 하였던 19세기의 가룽법전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는 좀 가혹한 측면이 있었다할 것이다.

식민지기의 프랑스인 법학자들도 현지사회의 법체계를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오래된 베트남법전을 상세히 연구하였다. 그들은 가룽법전과 그 역사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서산당(西山党)의 란이 수습되고, 남북통일을 이룬 구엔왕조는 사회 규율을 정비하고 법의 정신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정된 법전은 창조법전의 모사에 불과하였다. 그들은 가룽법전의 해석 및 주석을 시도하고 내용검토를 심화함에 있어 그 법체계의 불통일, 명령·율령·재판의 해석 등에서 볼 수 있는 모순과 혼란을 깨달았다. 그들의 가룽법전에 대한 평가도 또한 일본인학자와 마찬가지로 낮았다. 그 결과 가룽법전의 근본정신은 원래 「형벌은 통치를 돕는 수단」(Duretteste, 1940, 39)에 불과한 것으로 근대법의 정신과는 다른 것이었다고 인식하였다.

프랑스식민지의 법학자가 가룽법전에 대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은 그 후 프랑스에 의한 베트남지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후술하듯이, 식민지권력은 베트남사회를 프랑스본국과는 다른 규범과 사회조직에 기초한 ‘고유사회’로 보고 프랑스법의 적용은 한정적인 것에 머물렀다. 가룽법전은 그야말로 현

1) 일본에서 현대베트남법의 연구는 아시아의 사회주의와 법이라는 관점에서부터, 稻子恒夫, 鮎京正 등에 의해 행해진 稻子·鮎京(1989), 鮎京(1993). 여물의 영분에 의한 해체와 번역은 Nguyen Ngoc Huy & Ta Van Tai(1987)이 있다. 유감스럽지만 필자는 Yu Insun(1990)은 아직 읽지 못했다.

지사회가 유럽근대법의 도입에 적합하지 않은 후진 동양사회라는 이미지의 판단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 Ⅲ. 프랑스 식민지기의 근대법 도입

#### 1. 코친차이나의 토지법

토지법의 제정은 식민지정부의 중요한 과제였다. 프랑스식민지의 정책결정자들은 현지인과 이민자의 이해가 토지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대립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 현지인의 토지소유에 관한 개념은 유럽인의 근대적 토지소유권과 다르다는 것, 나아가 농촌의 토지공유권 존중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Rolland, 1936).

촌락공동체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톱킹, 안남지방은 토지는 협애하고 인구는 조밀한 지역으로, 자급적 농업생산이 이루어졌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주권자의 것이고, 농민은 사용권(私田=사유지와 公田=국가의 토지, 뒤에는 실질적인 村有田 등의 카테고리가 있었다)을 부여받는 대신에 주권자에게 조세를 납부했다. 촌락은 빈농에게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공유지를 많이 확보하여 돌아가며 경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부의 코친차이나는 18세기 이후에 입식(入植)이 시작된 베트남의 '미개척지(frontier)'였다. 입식과 개척은 기본적으로 개개 농민의 비교적 자유로운 의지로 추진되었고 19세기에 둔전제도에 의한 집단개척도 있었지만, 공동체규제는 적은 사회였다고 할 것이다. 화교도 존재하고 식민지화되기 이전부터 잉여쌀의 이출(移出)이 이루어졌다.

1890년대 이후에 들어서, 프랑스는 전인미답의 땅이 남아 있는 코친차이나 서부의 저습지에 대운하를 건설했다. 운하를 따라 광대한 경작지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입식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수출미를 생산하기 위한 식민지개발의 절호의 장이었다. 근대적인 토지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된 곳은 바로 코친차이나이다.

## (1) 사적소유권의 확립

당초 프랑스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토지점령과 점수를 진행시켰다.<sup>2)</sup> 제1차 사이공조약에 따라 코친차이나 동부 3성을 구엔왕조로부터 할양받자 프랑스는 반프랑스적인 행위자의 토지 전부를 몰수하는 명령을 내렸다(1863년).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화적으로’ 식민지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촌락의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그들이 경작하는 전토에 대한 권리는 프랑스법에 기초하여 보호된다고 강조하였다(Labussiere, 1889, p.253). 소유지를 프랑스어와 중국어로 토지대장에 등기할 것을 명하고, 종래 베트남법에서 금지하였던 압수나 공적목적을 위해 보상금의 지불없이 토지를 징수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Bouinain, A. & Paulus, A., 1885, pp.154, 363).

정부는 토지소유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려고 하였는가? 그들이 주목한 것은 식민지화 이전의 舊구엔왕조 지배하에서 사용되었던 지부(地簿, Dia Ba)<sup>3)</sup>이다. 1836년에 민망(明命 · Min Manh)황제의 통치하에서 개정정비된 지부는 전국의 조세징수의 기초였다. 그 부흥과 이용을 시도한 것이었다(Lu Van Vi, 1939, pp.64~65).

구엔왕조의 지부는 그러나 ‘무릇 근대적인 부동산등기부를 의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세 대장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촌마다 세가 일정하게 확보되면 촌락내부에 어떠한 소유권의 이전이 있더라도 국가가 관여하지는 않았다’(櫻井, 1987, p.365).

1870년대의 코친차이나에서는 Luro, Philastre 등에 의한 현지사회의 토지, 촌락,

2) 프랑스해군이 동나이강을 거슬러 사이공을 함락시켰던 것은, 1859년 2월의 일이다. 그 이후, 1861년에는 미토(My Tho)와 비엔호아(Bien Hoa)를, 또 1862년에는 빈롱(Vinh Long)을 점령했다. 같은 해에 구엔왕과 체결한 제1차 사이공조약에 의해, 코친차이나 동부3성은 프랑스에 할양, 1863년에는 캄보디아의 보호령화되고, 그리고 1867년까지 코친차이나 서부3성도 획득했다.

3) 남부의 지부는 舊구엔왕조시대의 남키 6성 26현 1715촌의 것이 하노이의 Institute des Etudes Han-Nom과 국가문서관에 현존하는데, 그 중 1836년 민망지부는 전체의 95.6%를 차지한다. Phan Huy Le, Vu Minh Giang, Vu Van Quan, Phan Phuong Thao(1995), p.42. 이들을 연구한 Nguyen Thi Luong에 의하면 원본은 몇 만 페이지에 달하고, 각각이 개인의 토지소유에 관하여, 토지의 위치, 면적, 형상, 소유자명, 생산물, 경작방법 등을 일정한 형식으로 모필(毛筆)에 의해 기록한 것이다.

법, 역사문화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기초로 촌락에 대하여 토지대장의 기재와 수복·정정을 의무지우고, 새로운 지부=명세목록장(un cahier de description)을 작성시켰다. 1871년 5월 20일자 법령, 1875년 4월 7일자 법령에는 각 촌락이 '지부'에 그 촌의 토지구획도를 붙여, 각 구획의 소유자명, 대략적인 면적, 경작의 분류(작물, 작기 등)를 명기할 것, 촌락에 있는 공유지, 미개간지, 무주지, 경작을 포기한 토지를 기재하도록 명하였다. 촌락은 성장(省長)에 의한 감독과 성의 현지인 시찰관의 검증을 통하여 지부의 기재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후 점증하는 유럽인의 소유지에 대해서도 그것이 위치하는 촌락의 목록장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Outrey, 1913, p.107 ; Lu Van Vi, 1939, pp.58~67).

토지등기령은 1880년대에도 되풀이 발령되었다. 등기가 진행됨에 따라 당국의 논면적에 대한 파악도 진전되었다. 1880년대에는 지세수입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식민지정부가 지부의 기재에 대한 관리를 일층 강화하였다. 식민지정부는 촌의 유력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 기재상의 부정, 공유지(公田)의 사적 유용에 벌칙규정을 두어 경계하려고 하였다.

특히 토지등기의 변경사항에는 엄격한 규정을 두었다. 예를 들면 등기할 때에 토지의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의 참사관(conseiller), 성장 및 그 촌의 행정부가 임명한 3명의 명망가(notable)로 구성된 위원회가 처리에 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이들에 대하여 등기형식을 지킬 것, 또한 대장의 기재에 대한 침삭을 금하였다. 동시에 토지상속, 토지매각, 토지포기에 의한 토지소유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상세한 해설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등 엄밀성을 요구하였다(Outrey, 1913, pp.109~111).

1887년의 토지등기령에서는 미등기 토지를 점유하는 것에 대하여 지부 등록을 개간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 또는 재판소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을 확정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정식 권리서와 조세의무를 지는 토지 증서가 부여되었다. 1피아스톨을 지불하면 지부의 초본도 얻을 수 있었다. 이리하여 그 토지는 프랑스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등기령과 같은 내용의 법령은 1908년 3월에 제출되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두에 걸쳐 토지등기를 마치고 지세를 신속히 지불하며 정규의 사적

소유권이 부여되는 것이 법에 명시되도록 하였다[高田 : 1984-a].

## (2) 국유지 불하제도

국유지불하제도는 미등기 미경작지를 나중에는 운하건설에 따라 창출된 경작 가능지<sup>4)</sup>를 국유지로 하여 신청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고, 절차를 거쳐 개발권을 허가하는 시스템이다. 일정한 기간 내에 개간을 마치면 확정양도가 결정되어 곧바로 납세의무를 진다.

최초의 국유지 불하는 사이공 구획을 대상으로 한 1865년의 공개경매령이다. 불하제도는 ㉠ 유상으로만 하는 도시부의 불하와 ㉡ 농촌부의 유상,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경제개발에 크게 공헌한 것은 후자이다. 나아가 여기에는 그 규모에 따라 인가할 수 있는 주체가 총독 또는 지방행정장관에 의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불하제도는 그 후 1880년대에 기본적인 변천이 있었다. 그 이전의 불하는 모두 무상이었지만, 유상제도는 실제 거의 기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500ha 미만의 면적의 국유지 불하를 무상으로 하고, 10ha 이하의 소규모는 지방 각성의 장에게 권한을 주었다. 그에 따라 불하를 희망하는 경우가 증대하고 토지분배가 일정한 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19세기 말까지 이 제도 아래서 코친차이나에서는 적어도 프랑스인에게 6만 헥타르, 현지인에게 25만 헥타르가 무상양도되었다. 프랑스인은 현지인에 의해 유리한 조치를 향수하면서 합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나아가 사람들은 현지인보다 유리한 조치를 향수하면서 합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나아가 메콩델타서부에 근대적 굴착기를 동원하여 운하를 파기 시작한 1899년부터 1907년 사이에 프랑스인에게 16만 헥타르, 현지인에게 13만 헥타르의 미경작지가 분배

4) 빗물과 메콩강의 수량 증가에 의해 수개월 동안, 침수되어 있었던 광대한 저지가 운하의 건설에 의해 배수되어 경작이 가능한 토지로 되었다. 이러한 토지는 바사크강 연안, 코친차이나 남서부 여러 성에 포함되었다. 그곳은 20세기 초반 이후, 쌀 수출의 일대 생산지로 개발된 메콩델타 서부이다.

되었다. 상업적인 벼농사의 발전을 기대하여 프랑스인에 의한 프랑스령 최대규모의 투기적 토지신청이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高田, 1984-b).

불하토지는 20세기 초두에는 300ha까지를 무상으로 하려고 하였다. 대규모 구획으로 불하가 진행되어 코친차이나 서부에는 일거에 대토지소유제도가 발달하였다. 가족노동을 기초로한 당시의 경제규모가 5-10ha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불하규모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도시부에 살던 대토지소유자는 현지에 관리인을 파견하여 생산활동을 맡겼다. 관리인은 입식자들을 소구획으로 나누어 소작지로 하면서 새로운 전답만들기를 추진하였다. 개발당초는 운영자금과 노동력부족이 문제였다. 그러나 1920년대의 쌀값 상승과 프랑스민간자본의 유입에 의해 지주가 개발자금을 얻으면서 코친차이나서부에는 광대한 논이 일거에 출현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이래 세계불황의 영향이 식민지 코친차이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쌀값의 폭락에 의해 해외시장이 닫힌 수출미생산현장에서는 생산포기, 지대불납, 채무동결을 회피할 수 없었던 지주의 몰락,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우대조치를 받은 대지주의 온존에 따른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되었다. 전후에 식민지독립전쟁이 시작되자 부재대지주의 소유지는 곧 해방구로 변모하였다. 인도지나전쟁(1946~54)은 경작자가 토지를 ‘탈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高田, 2001).

## 2. 촌락통치령

직할지 코친차이나의 식민통치(1862~1954)는 당초 약 20년 간은 프랑스해군성의 관할 하에 있었다. 군정말기 코친차이나는 4개의 감찰구(arrondissement)로 나뉘어 각구에 현역 프랑스해군사관이 정무감찰관으로서 임명되었다. 그들의 감독하에 베트남인이 동용되어 징세, 행정, 민병의 징발업무 등을 하였다.

1877년의 공적기록에 의하면 코친차이나의 촌락수는 2435,<sup>5)</sup> 인구는 약 152만

5) 베트남인에게 있어 남부는 새로운 입식지였지만, 그 입식의 형태는 주로 둔전이나 민간인

명이었다. 4개의 감찰구는 19개의 성(province)으로 나누어졌으며(나중에는 20개성으로 된다), 프랑스인 성장(省長)이 배치되었다. 성 밑에는 수 개의 군(canton), 각군에는 수 개의 촌(village)이 있었다. 군수(正總 · cai tong)는 군내의 촌의 대표자로부터 추천되어 하급관리로서 당국의 봉급을 받았다.

본국의 식민성이 새로이 설치된 1880년 이후, 군정은 민정으로 이행하였다. 문민통치가 시작되면서 식민지정부는 촌의 인두세대상자를 예로부터 내려오던 정부(丁簿)의 '등록민'으로부터 촌내의 모든 청년남자에게로 확대했다. 또한 촌의 자치는 등록민에 의해 선출된 명사회(大鄉職 · huong truc lon과 小鄉職 · huong truc으로 구성)가 담당하였지만, 하급 소향직인 사츠평(Xa trung · 촌장)을 식민지정부는 1882년부터 촌과 프랑스행정기구의 중개역으로 채용하였다. 이는 실제상의 촌의 지배자였던 대향직의 권위를 실추시킴과 동시에 자치에 대한 비협력을 초래하였다. 식민지정부에 의한 촌의 향직에 대한 불신이 그 배경이었다고 여겨진다(Osborne, 1969).<sup>6)</sup> 이러한 근대주의적 정책은 촌락내의 관행적 자치기능의 저하 및 촌락질서의 교란을 불러일으켰다. 19세기말에는 사츠평이 임무를 다할 수 없게 되는 사례와 도망하는 자조차도 나타나게 된다. 촌락해체의 위기가 염려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식민지정부는 1903년에 실추된 향직의 특권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부활시키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코친차이나 동부의 비교적 오래된 촌락에서 향직의 서열과 관행의 실태를 조사시켰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해 촌락지배층의

---

에 의한 개인에 의한 것이었다. 입식자 집단이 촌의 창설의 허가를 관리에게 신청하면, 청년남자의 호적부에 등록, 또 사전, 공전 및 촌유전 등을 토지대장인 지부에 기재하고, 징세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 새로운 촌의 설립에 관한 신청제도는 프랑스식민지 시기에도 기본적으로 계승되었다.

- 6) 촌락내의 향직에 대한 당국의 불신감은 그들의 不正으로부터 촌의 공유지를 지키기 위해 민망황제시대와 마찬가지로 「公田의 不可讓渡性을 강조하는 법령」을 1880년에 제정한 것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유지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응은 그 후에는 전환하게 된다. 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매매나 3년 이상에 이르는 임대도 인정되게 되었다(1892, 1904년 법령). 그 결과 이들 토지이용의 공동체적 성격은 점점 소멸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高田 1984-a, pp.83~84).

서열을 정하고 자치의 역할분담을 자세히 성문화한 촌락통치령을 포고하였다. 촌락을 재편하여 지방통치를 위한 최말단행정기구에 편입시켰다.

### 3. 관습법의 입법화

#### (1) 프랑스식민통치와 고유법

프랑스혁명의 이념에 터잡은 프랑스 근대법은 식민지의 유색인종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프랑스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적용된 역사가 있다(1833년 4월 24일법).<sup>7)</sup> 그러나 이 ‘동화주의(assimilation)’ 원칙은 프랑스 식민지의 확대와 더불어 쇠퇴하고, 자치(autonomie)주의, 공동(collaboration)정책, 협동(association)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현지사회의 고유법과 관습법을 존중하는 원칙(principe du maintien des institutions juridiques indigenes)으로 전환되었다.<sup>8)</sup> 법은 전통, 역사문화, 종교 등에 의해 형성된 사회생활의 실태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본국의 법을 일방적으로 식민지에 강요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식민지 베트남에서도 채택되었다.

그것은 인도지나에 사는 사람들의 법적 지위에도 밀접하게 나타났다. 인도지나의 주민은 법률상 ㉠ 프랑스국민과 ㉡ 비프랑스국민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리고 전자 ㉠은 공민권을 갖는 시민(citoyen=公民)과 예속민(sujet=籍民)으로, 또한 후자는 외국인과 피보호민 protege(통킹·안남)으로 분류되어 개별 규정에 따라 취급되었다(刑部, 1943, p.976).

즉 공민권을 갖는 시민은 유럽인에 한정되었다. 직할식민지 코친차이나 및 직

7) 식민지주민이 일률적으로 프랑스시민으로 되었던 지역은 a. 안티유군도, 프랑스령 기아나, 레유니온도, b. 산마리도(마다가스카르도), c. 세네갈 4도시, d. 타히티제도(福井, 1944b, p.445).

8) 단 「동화주의」 원칙은 19세기 말에 본국과 식민지의 무역관계를 강화할 목적에서 도입된 관세법 부분에서는 당시의 코친차이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할도시(하이노·하이퐁, 트라누)에 사는 현지인 *sujets*는 ‘프랑스국민’이지만 프랑스법이 아니라 토착법 및 현지인 사법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대법이 전제하는 시민이 아니었다. 유럽과 다른 규범, 조직 및 제도를 갖는 토착사회의 현지인은 공사회의 신분법에 근거한 법적 지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福井, 1944-b).<sup>9)</sup>

그 대신 특히 가족제도를 기초로 하는 혼인, 재산, 상속 등에 관한 민사부문은 현지고유의 토착법과 관습법이 유지되어 그 입법화가 추구되었다. 사회활동의 가장 근저에 있는 가족의 관습(조상숭배, 가계계승, 유교도덕 등)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은 식민지체제의 안정에 연결되었다. ‘가족과 공동체는 인도지나의 기본적인 제도로서 존속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법률로 개편하고 거기에 편협한 개인주의를 도입하면 프랑스의 통치는 일대혼란에 직면한다(Dureteste, A., 1938)’고 식민통치자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반면 민사 이외의 분야에서 고유법을 적용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곧바로 프랑스법이 확대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코친차이나에서는 舊구엔왕조시대의 형법은 19세기말까지 프랑스형법으로 교체되었다.

식민지베트남에는 이렇게 두 개의 법체계가 병존하였다. 식민지에 사는 유럽인들에게는 프랑스법이, 현지인에게는 고유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었다. 가끔 양자가 계쟁당사자가 되는 경우, 즉 두 개의 체계 사이에서 법의 식민지적 저축(*conflict*

9) 현지인이 프랑스시민(*sitoyen francais*)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어를 충분히 구사할 능력과 프랑스문화를 수득(修得)하고, 10년 이상의 관직, 충분한 학력, 프랑스인의 양자, 프랑스인 여성의 남편, 법학·문학·의학대학의 학위, 칭호, 훈장 등을 얻을 것이 필요했다. 보호민이 시민으로 되기 위해서는 보호국 프랑스인 이사장관(理事長官)을 통하여 국왕의 허가까지 필요했다(福井, 1944-b, pp.445~452).

동양의 외국인 중, 일본인은 유럽인과 마찬가지로 법적 지위가 부여되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인은 1930년 난장(南京)조약이 체결되기까지 보통의 외국인으로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원주민법의 적용을 받았다(江川, 1944, p.433).

프랑스인과 현지인 사이의 혼혈에게는 프랑스국적이 부여되었다. 다른 한편 중국인과 현지인의 혼혈인 경우에는 1933년 이후에 원주민으로 간주하는 법령이 공포되었지만 그 이전의 상황은 다소 복잡한데, 중국인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예도 많았다(福井, 1944-a).

colonial) 문제가 발생하면 프랑스법이 우선되었다(江川, 1944, pp.423, 431).

## (2) 고유법의 법전화

식민지정부의 사법(私法)정책은 이와 같이 토착제도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였다. I에서 서술하였듯이 베트남 고법에는 여율(黎律 · Code de Le)이나 가롱법전(嘉隆法典 · Code de Gialong), 민망(明命), 티에우 치(紹治), 투득(嗣德) 등의 황제들이 발포한 칙령 등이 있지만 그것은 공법적 규정이 많고 민사에 관한 규정은 많지 않았다. 개인의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관습이며 그것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프랑스식민지정부는 현지인에게 적용할 법제도의 정비에 쫓겨 고유법의 편성을 서둘렀다.

고유법의 법전은 코친차이나에서는 1883년에 「안남법 요강」(Precis de la legislation annamites)이, 1931년에 「통킹민법(1455개조)」, 1936년부터 39년에 「안남민법(1709개조)」이 편찬되었다.

1883년 편찬의 코친차이나의 그것은 대상이 人事法에 한정되어 문민통치가 시작된 초기의 응급적이고 불완전한 법전이였다. 프랑스민법의 일부를 그대로 원용하거나 규정에 없는 것은 구엔왕조시대 이전의 법전에 준거하여야만 했다. 이에 대하여 통킹민법과 안남민법(皇越法戶 Hoang Viet Ho Luat)은 민법의 전역을 망라하고, 고유법의 전통을 충분히 도입한 법전이다(福井, 1944-c, p.570). 통킹민법은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독립 후에도 적용되어 1959년까지 그 효력을 가졌다(武藤, 2002, p.139).

통킹민법은 15년 세월을 걸쳐 편찬되었다. 1917년에 총독령에 의해 민법편찬위원회가 설치되고, 인사편과 재산편을 내용으로 하는 통킹민법 제1편이 처음으로 완성되었다. 1921년에는 이를 시험적으로 하동(Ha Dong)지구에서 시행하였다. 이어 1927년에 안남법자문위원회(Comite consultatif de jurisprudence annamite)가 하노이에서 발족하고 대규모 관습조사가 3년간 계속되었다. 그리고 1930년 8월에 설치된 민법전편찬위원회가 그 조사자료를 충분히 분석하고 마침내 통킹 현지인재판소에서 적용할 민법전(Code civil a l'usage des juridictions indigenes du Tonkin)의 편찬은 완

료되었다. 이 민법은 1931년 3월30일부 통령理事長官令으로 공포되었다.

통킹민법의 구성은 프랑스민법을 모델로 하여 프랑스어와 베트남어로 쓰여졌다.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프랑스어판을 기준으로 하였다. 거기에는 이미 I에서 서술하였듯이 전근대시대로부터 계속된 특징적인 관습법, 즉 일부다처제, 가산의 부부공산제, 상속에 있어서의 유언의 원칙, 법정상속의 경우 균분주의, 조상숭배를 위한 제사의 유지 등이 성문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IV. 결론

식민지시대의 베트남 고법을 연구한 프랑스법학자들은 19세기 구엔왕조의 정부에 의해 편찬된 가률법전을 평하여, 전근대 베트남의 법은 군주 및 관리의 지위 보전과 민중관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효행과 조상제사의 실천을 엄수시켜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한 법전이라고 단정하였다. 거기에는 근대사회의 기초인 개인(=시민)은 문제시되지 않고 공동체가 존중되었다는 것, 법은 공동체의 자치와 집단 생활의 조직원리를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수단으로 생각되었다. 읽고 쓸 수 없는 민중은 법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실제상의 ‘법’은 단지 도덕법만이 있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베트남사회는 권력자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는 사회’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그러나 방금 살펴보았듯이 식민지 지배하의 베트남에서 유럽근대법은 서양근대 사회가 만들어낸 법개념이나 법체계를 결여한 채 적용되어 식민지통치에 편리한 것만 형편에 따라 한정적으로 도입된 데 불과하다.

새로운 개척지에 도입된 근대적 토지법은 개발을 촉진하고 무제한적인 욕망에 자극받은 경제행위를 확대하여 사회모순을 분출시켰다. 그러는 한편 식민지 지배자는 서구와 다른 베트남사회에 고유한 법률·관습을 적재적소에 이용하였다. 전통적인 가족과 공동체는 식민지사회의 기본적 제도로서 존속시켜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근대법의 기초인 개인주의를 식민지에 이식하면 프랑스의 통치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근대유럽법이 부분적으로밖에 도입되지 않았던 베트남식민지의 법제도는 균일하지 못하고 절충적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가치규범, 가족주의, 혼인 등의 풍습에서 나타나는 봉건적인 본질의 사회 근저에서부터 불식을 방해하였다. 사람들의 근대적 법의식과 법제도는 아직 발전되지 못한 채 독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鮎京正訓, 『ベトナム憲法史』(日本評論社, 1993)

Bouinai, A. & Paulus, A., *L'Indochine française contemporaine, Cochinchine*(Paris : Challamel Aine, 1885)

Dureteste, Andre, *Cours de Droit de L'Indochine*, 1938, Paris(二木靖譯 『佛領印度支那ノ司法組織竝ニ東京安南民法ノ概要』(東亞研究所, 1940))

江川英文, 「佛印に於ける原住民の適用法規」, 『法學協會雜誌』第62卷第4號(法學協會, 1944)

福井勇二郎, ㉑ 「一夫多妻制に關する安南の慣行について」, 『法學協會雜誌』第62號第1號(法學協會, 1944)

\_\_\_\_\_, ㉒ 「佛印に於ける原住民の身分について」, 『法學協會雜誌』第62卷第4號(法學協會, 1944)

\_\_\_\_\_, ㉓ 「佛印に於ける現行原住民私法の佛蘭西化について：東京民法を中心に」, 『法學協會雜誌』第62卷第12號(法學協會, 1944)

\_\_\_\_\_, ㉔ 「婚姻に關する安南人の慣行」, 『法學協會雜誌』第64卷第9・10號(法學協會, 1944)

稻子恒夫・鮎京正訓, 『ベトナム法の研究』(日本評論社, 1989)

刑部莊, 「sujet という身分について」, 『國家學會雜誌』第57卷第8號(國家學會事務所, 1943)

Labussiere, "Etude sur la propriete fonciere rurale en Cochinchine et particulierement dans l'inspection de Soctrang," *Excursions et Reconnaissance*, No.3(1889)

Lu Van Vi, *La propriete fonciere en Cochinchine*(Paris, 1939)

牧野巽, 「安南の黎朝刑律にあらわれた家族制度」, 『支那家族研究』(生活社, 1944)

武藤司郎, 『ベトナム司法省駐在體驗記』(信山社, 2002)

Nguyen Ngoc Huy & Ta Van Tai, "The Le Code, Law in Traditional Vietnam, A Comparative Sino-Vietnamese Legal Study with Historical-Judicial Analysis and Annotations"(Ohio University press, 1987)

仁井田陞, 『補訂 中國法制史研究 土地法, 取引法』(東京大學出版會, 1960)

Osborne, M., *The French Presence in Cochinchina and Cambodia, Rule and Response (1859-1905)*(N.Y., 1969)

Outrey, *Nouveau recueil de legislation cantonale et communale, Annamite de Cochinchine*(Saigon, 1913)

Phan Huy Le, *Vu Minh Giang, Vu Van Quan, Phan Phuong Thao, Dia Ba Ha Dong*, He Thong Tu Lieu Dia Ba Viet Nam No.1, Hanoi, 1995

Rolland, Louis & Pierre Lampue, *Precis de Legislation Colonial, 2e ed.*, 1936(東亞經濟調查局 編譯 『佛蘭西植民地提要』1937年)

櫻井由躬雄 『ベトナム村落の形成 : 村落共有田=コンディエン制の史的展開』(創文社, 1987)

高田洋子, (a) 「植民地コーチシナにおける國有地拂下げと水田開發 : 19世紀末までの土地政策を中心に」, 『國際關係學研究』No.10(津田塾大學, 1984)(*The Land Concession and the Development of Rice Cultivation in the French Cochinchina ; Colonial Land Policie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o.10, 1984*)

\_\_\_\_\_, (b) 「20世紀初頭のメコン・デルタにおける國有地拂下げと水田開發」, 『東南アジア研究』22卷3號(京都大學東南アジア研究センター, 1984)(*Land Concession and the Development of Rice Cultivation in the Mekong Delta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Southeast Asian Studies, Vol.22, No.3, 1984*)

\_\_\_\_\_, 「第一次世界大戰前におけるコーチシナの米輸出とフランスのインドシナ關稅政策」 『國際關係學研究』(津田塾大學, 1979)

高田洋子, 「インドシナ」, 『岩波講座 東南アジア史 6 : 植民地經濟の繁榮と凋落』(岩波書店, 2001)

山本達郎, 「安南の不動産賣買文書」, 『東方學報』第11冊(東方文化學院東京研究所, 1940)

Yu Insun, *Law and Society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Viet Nam*, Asiatic Research Center(Korea University, 1990)

## “Cohabitation” of the European Law and The Customary Law in Vietnam under the French Domination

Takada Yoko\*

(1)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the Vietnamese nation (the Annam Empire), which originated in the Red River delta, successfully invaded into the southern part of Vietnam, holding the same area of the present Vietnam as its territory. From the mid-nineteen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when European countries established their rules in the Southeast Asia, Vietnam was under the French domination. The former Nguyen dynasty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 Tonkin, Annam, and Cochinchina. They were governed under the different political systems. Vietnamese people had to experience the independence war just after the World War II and Vietnam War to recover the national unity in 1976.

The French colonial rule can be considered as a turning point from pre-modern society in the nineteenth century to modern society in the twentieth century. It presents some important issues in the study of Vietnamese history. This paper discusses the problem of the legal articul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from the viewpoint of history. The former part of my presentation deals with the Vietnamese (ethnic Kinh) laws in the pre-colonial period when Vietnam was a part of the East Asian cultural zone with Chinese predominance. The

---

\* Professor, University, Japan.

latter part analyzes the process of legal transformation under the French rul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system.

(2) Nowadays Vietnam is regarded as a part of Southeast Asia in politics, economy, and scientific discussions. In the traditional thinking of the Vietnamese people, however, Confucian social norms are easily found.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rule which lasted for over one thousand years was clearly marked in the Vietnamese history. The Vietnamese dynasties adopted the similar government systems to the Chinese one since the independence from Chinese rule in the tenth century. They had the codes of law written in Chinese character, which was seldom seen in other Southeast countries.

Japanese scholars majoring in Chinese history of law initiated the study of the Annam laws before the WW II. They thought that the Vietnamese (Annam) history and the Annam laws were a part of the world of east asian culture. They compared the Annam laws such as Code of Le<sup>1</sup> which was compiled in the fifteenth century as the first legal code in Vietnam, and Code of Gia Long<sup>2</sup> in the nineteenth century with the Chinese laws. They found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legal systems. However, they didn't miss the differences. The Annam laws were not similar to the Chinese in collective ownership of husband and wife, indemnity, and allotment in communal land. They were pioneers in this field of study.

(3)-A. I'll discuss on the land law in Cochinchina as a typical example for the French laws introduced to Vietnam during the colonial time. It promoted rapidly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to increase the rice production for export in the Mekong delta, contributing greatly to the colonial economy. In the traditional Vietnamese society, all of the land legally belonged to the sovereignty, and local communities actually managed the land. The French colonial government changed the land system and issued the orders to register private lands. Lands without owners were regarded as the government-owned, and finally were alienated

to the applicants for disposal under the law of Concession. The development, however, led to confrontation between the absentee land-owners and farmers who actually cultivated the new lands, resulting remote cause of the destruction of the colonial regime.

(3)-B France adopted so-called assimilation principle, under which the favor of the French law was extended to the colonies. However, it was only appropriate for a part of Indochina. The special principle of association was applied to institutionalize indigenous laws and social organizations.

First, legal status of the people living in Indochina was complicated. It is divided into two types : the French nationality and the non-nationality. The former was divided further into the citizen (citoyen) having citizenship and the subject (sujet) ; The latter also into the foreigner and the people of the protectrates (protege). In Cochinchina, Hanoi, Hai Phong, and Touraine where France directly governed, the natives were subjects who had French nationality, but didn't have citizenship. The French laws protecting human rights didn't apply to them. Modern human rights were not given to the natives living in the society with different norm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from Europe. Their legal status kept the old indigenous one.

Secondly, the colonial government adopted the traditional village systems to administrate local area. Vietnamese villages in Cochinchina were governed by notables who were elected among the registered people (les inscrits). In 1904 French colonial government issued the village governance law under which the traditional village hierarchy was legalized, and village management and allocation of power were institutionalized. Thus, the French laws supported the traditional systems.

Thirdly, the French colonial government respected the customary law in civil cases such as business transactions, marriage, and inheritance. In 1927 the Annam Advisory Committee of Jurisprudence was organized to edit a civil code in the French style. In 1931 the first civil code was issued in Tonkin. On the other hand,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based on

Code of Gia Long was replaced with the French criminal laws as early as the late nineteenth century.

4. In colonial Vietnam, the modern European law was only partially introduced. In the frontier of the Mekong delta, the new laws on land ownership promoted greedy economic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colonialists intentionally preserved the indigenous laws and practices for their effective rule. They thought that the traditional family and community were the basis of the colonial society. If they introduced French laws, the individualism embedded in it would endanger the Vietnamese traditional society, hence the French domination.

Therefore, the Vietnamese society was an uneven mixture of the modernity and the tradition. The feudal value and character of kinship, marriage, and village organization were maintained and preserved. (Yoko Takada)